

신설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지방소득세 - 분할납부 규정 없음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2개월 이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3. 1월 예정 지방세법 제96조제6항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사회복지법인등의 사회복지 사업용 부동산 등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사회복지법인, 한센인협회, 일부 복지시설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종업원분) 100% · (대상 확대·재편) · (대상 확대·재편) ·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100% ·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 주민세(사업소분·기본세율) 100% - 일몰기한 : 2022.12.31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사회복지법인, 한센인협회 : 현행과 같음 · 무료 복지단체 : 취득세·재산세 50%*, 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조례로 50%p 한도로 추가지원 가능 · 유료 복지단체 : 취득세·재산세 25%*, 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조례로 50%p 한도로 추가지원 가능 · (좌·동) · (좌·동) - 일몰기한 : 2025.12.31.	'23. 1월 예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상속시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배우자 단독 등록	감면 적용대상 확대 - (감면대상자) 자녀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도 감면 적용 ※ 민법상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절차 어려움 반영	'23. 1월 예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소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 8024-5540)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취득세 100% 면제(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022.12.31.	감면 연장 - (좌·동) - 일몰기한 : 2024.12.31.	'23. 1월 예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 소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 8024-5540)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감면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 재산세 37.5% - 입주기업 · 취득세 50% · 재산세 37.5% - 일몰기한 : 2022.12.31.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 재산세 35%(5년 간) - 입주기업 ·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 재산세 35%(5년 간) - 일몰기한 : 2025.12.31.	'23. 1월 예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납부의무의 승계 - <신설>	납부의무의 승계 - 체납자 사망 또는 체납 법인 합병 시 상속 재산 등에 체납처분 집행 근거 마련	'23. 1월 예정 지방행정제도·부과금법 제9조의3, 제9조의4, 제19조
강제징수의 속행 등 - 국제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간접 규정	강제징수의 속행 등 - 법에 직접 규정 ※ 상속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 속행 등 ① 체납자 재산 강제징수 시작 후 사망 또는 합병으로 소멸 시에도 속행 ② 체납자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 압류는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봄	

- 소관부서 : 징수과 (☎ 8024-2521)

신설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신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후) - 조사진행 중에는 조사의 범위를 확대 할 수 없음 - 조사범위 확대시 납세자에게 통지	'23. 1월 예정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4

➡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납기 전 징수 사유 (전) - 강제징행을 받을 때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후)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채무 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3. 1월 예정 지방세징수법 제22조

➡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지방세 납부의 방법 (전) - 신용카드, 자동계좌 이체	지방세 납부의 방법 확대 (후) - 납부의 방법에 직불카드, 통신 과금 서비스(핸드폰 소액결제) 추가	'23. 1월 예정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4조

- 소관부서 : 징수과 (☎ 8024-2512)

신설

➡ **세무조사 개시 절차**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세무조사 연기신청 (전) -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연기신청 사유 소멸 후 조사개시(확대) - (좌·동) - 조사개시 근거 및 절차 마련 (사유) 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 (절차) 조사개시 5일전까지 통보 등	'23. 1월 예정 지방세기본법 제83조

04 일반행정분야

➡ **‘만 나이’ 통일**

- 추진배경 : 한국의 나이 계산법으로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어 행정적 혼란 초래
- 주요내용 :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
- 시 행 일 : 2023.6.28.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내 용 :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 답례품 제공
- 기부금사용 :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 등
- 관련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23.1.1.
- 소관부서 : 자치협력과 (☎ 8024-2712)

신설

➡ **송탄출장소 「여권업무」 개시**

- 주요내용 : 송탄출장소 여권 업무 시행
- 대 상 자 : 여권접수 및 교부 등 여권업무가 필요한 모든 시민 (주소지 무관)
- 시 행 일 : 2022.12.13.(화) ~
- 소관부서 :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 8024-611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확대 및 조회대상 추가**

- 개정 필요성
- 해외거주, 무연고자 등 사유로 신청기한을 도과시,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 문의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 발생
- 개정 주요내용
- 신청기간 확대 (6개월 → 1년)
: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 가능 (제6조)

현행	개정
제6조(사망자 재산조회) ① ~ ③ (생략) ④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사망자 재산조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 조회대상 서비스 추가 : 신규 서비스(1종) 추가 명시(제7조)	
현행	개정
2015.6.30.(최초 시행)	①금융 ②국세 ③지방세 ④토지 ⑤자동차 ⑥국민연금
2017.8.31.(3종 추가)	⑦공무원연금 ⑧사립학교교직원연금 ⑨군인연금
2018.9.7.(2종 추가)	⑩ 건축물, ⑪건설근로자퇴직금제
2020.10.30.(3종 추가)	⑫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⑬군인공제회 ⑭과학기술인공제회
2021.10.28.(2종 추가)	⑮ 한국교직원공제회 ⑯ 근로복지공단

- 관련근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제7조
- 시 행 일 : 2022.7.29.
- 소관부서 : 민원행정과 (☎ 8024-2871)

➡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을 확대 및 감면 조항 신설**

- 주요내용
- 상시 사용시설이 아닌 종교 집회장·집회장·관람장 등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을 확대 (30% → 40%)
-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항 신설
※ 감면 대상
1.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실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단, 주거용 건물에 한함) : 면제
2. 마을상수도의 광역상수도 공급 전환사업(단, 주거용 건물에 한함) : 면제
- 관련근거 :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 시 행 일 : 2022.12.20.
- 소관부서 : 수도과 (☎ 8024-5182)

➡ **생활민원 대상자 및 서비스 범위 확대**

- 생활민원 지원대상자 확대

조항	현행(제2조제2호)	개정(제2조제2호)
가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다목	80세 이상 노인 가구	80세 이상 노인가구
라목	그 밖에 시장이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0세 이상 독거노인 (신설)
마목 (추가)		65세 이상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세대 (신설)
바목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사목 (추가)		그 밖에 시장이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존 라목에서 사목으로 이동)

- 생활민원 야간처리에 관한 근거 마련

현행 (제3조제2항)	개정 (제3조제2항)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되, 민원인이 야간 (18:00~22:00)에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야간에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 생활민원 재료비 기준 확대

조항	현행 (제6조)	개정 (제6조)
제1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 건당 30만원 이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 연간 50만원 이하 (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제2호	제2조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민원(제4조제2호) : 건당 10만원 이하	제2조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민원(제4조제2호) : 연간 30만원 이하 (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6조
- 시 행 일 : 2022.12.20.
- 소관부서 : 민원행정과 (☎ 8024-5050)

2023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소개



01

사회복지분야

→

보훈수당 상향 및 신설

구분	종전	변경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50,000원	월 100,000원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0,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관련근거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 시 행 일 : 2023.1.1.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8024-3043)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구분		종전	변경
사업량		50가구	100가구
지원 자격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거주기준	(공동)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월세)전월세전환율 5.8% 이하	(공동)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월세)전월세전환율 5.8% 이하

- 신청기간 : 2023.4월 중
- 지원대상 : 만19세 ~ 만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 지원기간 : 2023.7월 ~ 2025.6월
-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2%지원(생애1회)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관련근거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8024-3077)

→

청년 전·월세 부동산 중개보수료 감면

신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송탄·안중 지회 재능 기부

- 신청기간 : 2023. 1월부터
- 지원대상 : 평택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 만19세 ~ 만39세 청년 1인 가구
- 중개규모 :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① 전·월세 임차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료 20% 감면
- 전세 중개보수 수수료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 보증액+(월세액×100)
- 예시) 보증금 3천만원+월세 50만원의 경우
↳ 환산보증금 8천만원의 법정 중개보수 30만원의 20%(6만원 감면)
② 신뢰성 있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제공
- 이용방법 : 직접 방문 (※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 71개소)
- 관련근거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8024-3045)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

●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20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023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2022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2023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7%)	2022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2023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2022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2023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대비 5.47% 인상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시 행 일 : 2023.1.1.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8024-3031)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상향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 60%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5% 이하)

(단위 : 원)

구분	연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지원내역
기준중위소득(58%)	2022	1,890,849	2,432,927	2,970,226	3,494,219	· 아동양육비 : 자녀1인 월200,000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생 자녀1인 연93,000
	2023	2,004,569	2,572,193	3,132,559	3,671,799	
기준중위소득(60%)	2022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2023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기준중위소득(65%)	2022	2,119,055	2,726,556	3,328,702	3,915,935	증명서만 발급
	2023	2,246,500	2,882,630	3,510,626	4,114,947	

- 관련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시 행 일 : 2023.1.1.
-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 8024-3058)

→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 자격(1·2종) 개편

●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1·2종 차등적용

종전	변경
- 근로능력유무 고려 없이 모두 1종 수급권 -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1종)	- 2023년 1월 1일 신규수급권자부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자격 부여 -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1·2종)

※ 타법 수급권자 :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5·18민주화운동, 북한이탈주민 등

- 자격대상
 - (1종)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2종) 1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시 행 일 : 2023.1.1.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8024-3033)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위 : 원)

구분	연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지원내역
기준중위소득(60%)	2022	2,516,821	3,072,648	3,614,709	· 아동양육비 : 자녀1인 / 월200,000
	2023	2,660,890	3,240,578	3,798,413	

-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 시 행 일 : 2023.1.1.
-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 8024-3058)

→

부모급여 지원

(단위 : 만원)

(현행) 2022년 영아수당					➡	(개편) 2023년 부모급여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기대	사실 미이용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기대	사실 미이용	부모급여	현금 70	현금 월35	가정양육수당 월10
		현금30	월15	월10						
	사실 이용	보육료(바우처)지원		사실 이용		부모급여		현금 바우처70	보육료(바우처)지원	
		월50	월50						월28~36	월50

- 지원대상 :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영아
- 지원내용 : 0~11개월 영아 대상 700천원 현금 지원(사실 이용 영아:바우처+현금 지원
12~23개월 사실 미이용 영아 대상 350천원 현금 지원)
- 관련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
- 시 행 일 : 2023.1.1.
-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 8024-3053)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기준 상향

-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복지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5%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은 72% 이하로 동일)

(단위 : 원)

구분	연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지원내역
기준중위소득(60%)	2022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 아동양육비 : 자녀1인 월350,000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생 자녀1인 연93,000
	2023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기준중위소득(65%)	2022	2,119,055	2,726,556	3,328,702	3,915,935	
	2023	2,246,500	2,882,630	3,510,626	4,114,947	
기준중위소득(72%)	202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증명서만 발급
	2023	2,488,431	3,193,067	3,888,694	4,558,095	

- 관련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시 행 일 : 2023.1.1.
-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 8024-3058)

→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구분	종전	변경
지원대상	만19세 ~ 만39세 청년구직자	만18세 ~ 만39세 청년구직자

- 지원기간 : 2023.1.1. ~ 예산소진시까지 (2023.1.1.부터 신청)
- 지원내용 : 대여비 1회당 평균 42천원 / 1인 연 5회 이하 / 3박 4일
- 대여품목 : 남) 자켓, 팬츠,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여) 자켓, 스커트 / 팬츠, 블라우스, 구두
- 대여업체 : 슈트갤러리(수원점 : 031-211-0433 / 태백 ×)
마이스윗인터뷰
(신촌점 : 070-8160-3010, 사당점 : 02-522-3010 / 태백 O)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플랫폼(잡아바 : <http://apply.jobaba.net>)
- 관련근거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8024-3045)

→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신설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수급자
- 지원금액 : 분기별 3만원(연간 12만원)지원 ※ 매년 12.31. 금액 소멸
- 지급방식 : 지역화폐카드 충전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시 행 일 : 2023.1.1.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23)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구분	(개편 전) 운영비 지원	(개편 후) 보육료 지원
지원방식	·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외국인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일괄 배분(1인당 22천원 수준) · 지원 금액만큼 보육료 감면 의무화	·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만3~5세) 1인당 100천원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 전체	·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만3~5세)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자녀 (만 3~5세 유아)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자녀 1인당 100천원 바우처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
- 시 행 일 : 2023.1.1.
-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 8024-3053)

03

세정분야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판결에 의하여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추가	'23. 1월 예정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2항

→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불복청구 대상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	불복청구 대상 확대 - (좌동) - 이해관계인 추가 ·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 납종인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중중	'23. 1월 예정 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취득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일부인정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시가 불인정)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 과세표준을 취득원인별로 구분 재편 · 과세표준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 · 원칙 : 시가인정액* · 예외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매매시대가액,감정가액,경·공매가격 등	'23. 1월 예정 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2 ~10조의7

※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제외 (지방세법 제21조제3항)
- 당초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과표를 경정하여 직권부과하기 전에,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 제외

→

증여 등 무상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증여 등 무상취득 취득세 기한 - 신고납부기한 : 6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등 무상취득 기한 연장 - 신고납부기한 : 60일 이내 · (좌 동) · (좌 동) · 무상취득(증여 등)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3. 1월 예정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